

# 생활관규정

제정	2007. 5. 1	규정 제 64호
1차 개정	2007. 5. 1	규정 제 64호
2차 개정	2007. 12. 31	규정 제126호
3차 개정	2008. 6. 19	규정 제165호
4차 개정	2009. 7. 1	규정 제199호
5차 개정	2011. 3. 2	규정 제267호
6차 개정	2011. 5. 11	규정 제281호
7차 개정	2011. 9. 15	규정 제305호
8차 개정	2013. 4. 15	규정 제407호
9차 개정	2013. 12. 4	규정 제475호
10차 개정	2014. 2. 3	규정 제491호
11차 개정	2015. 8. 11	규정 제563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5)

**제2조(경인교육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 이라 한다)의 명칭)**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생활관은 계양생활관, 경기캠퍼스생활관은 예림생활관으로 한다. (개정 2013.4.15)

**제3조(생활관 이용기간)** ① 생활관의 이용기간은 개학기간과 같이하되, 필요에 따라 이용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을 연장, 단축, 휴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방학기간에도 면학을 목적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자가 관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인원 이상에 도달할 경우
2. 교육연수원의 연수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08.6.19)
3. 그 밖에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관생이 아닌 자는 총장 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관생생활수칙)** 관장은 관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생생활수칙을 정하여 관생들이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제2장 조 직

**제6조(생활관장 등)** ① 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학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생을 지도하고 관생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07.12.31, 2013.4.15)

② 행정실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관장을 보좌하여 관생을 지도한다.

③ 그 밖의 생활관 직원의 인원과 직무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제7조(삭제 2011.5.11)

제8조(자치위원회) 관장은 관생들과 협의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목개정 2015.8.11.]

### 제3장 위원회(개정 2015.8.11.)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7.1, 2014.2.3)

[제목개정 2014.2.3]

#### 제9조의2

[중전 제9조의2는 제12조의2로 이동(2015.8.11.)]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임교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7.1)

②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행정지원과장,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4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09.7.1, 2011.3.2, 2013.4.15)

③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목개정 2014.2.3]

제11조(운영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2.3, 2015.8.11.)

1. 생활관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삭제 2011.5.11)
4. 관생지도와 관련한 중요사항
5. 그 밖에 규정의 개폐 등 생활관 관련 사항

[제목개정 2014.2.3]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14.2.3]

제12조의2(생활관비심의위원회) ①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관비 책정을 위하여 생활관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관비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처장, 사무국장, 행정지원과장, 학생대표 3명, 외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관생대표는 관생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외부 관련 전문가는 우리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하고 총장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1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8.1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비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
2. 생활관 운영 결산보고서 (운영 예산내역 포함) 및 재무결산보고서
3. 생활관비 적정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에서 이동(2015.8.11.)]

[중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2015.8.11.)]

**제12조3(수당의 지급)** 위원회(생활관비심의위원회 포함)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에서 이동(2015.8.11.)]

##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기능)** 생활관을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심신 수련과 인격 도야에 힘쓴다. (개정 2007.12.31, 2015.8.11.)

**제14조(입사 자격)**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건강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2.31)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확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그 밖에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제16조(입사생 선발)**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기간 중에 공지된 절차에 의해 입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입사자를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③ 입사 지망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④ 관생선발 기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7조(입사 등록)** 입사예정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사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5.8.11.)

1. 서약서
2. 삭제 (2015.8.11.)
3. 지정된 의료기관 건강진단서
4. 그 밖에 생활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18조(퇴사 처분)** 관생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장은 해당 입사생을 퇴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5.8.11)

1.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제15조의 입사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3. 그 밖에 공동생활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9조(퇴사시 공용물품 반납)** 위 규정 제18조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까지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제20조(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5장 경비 및 관리비(개정 2015.8.11.)

**제21조(경비부담)**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22조(관리비)** ① 관생은 생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② 전항의 납부금 중 관리비는 물가와 운영상황에 따라 생활관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3)

③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납부금은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5.8.11.]

**제23조(관리비의 반환)** ① 일단 납부한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7.12.31, 2015.8.11.)

1. 과오납의 경우

2. 휴학, 제적,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 (개정 2011.9. 15, 2013.12.4)

3. 입사허가를 받은 자가 입사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되, 잔여기간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방학 때도 동일 적용). (개정 2013.12.4, 2015.8.11.)

③ (삭제 2007.12.31)

[제목개정 2015.8.11.]

**제24조(납부기한)** ① 관리비는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8.11.)

③ 관리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자동적으로 입사가 취소된다.(신설 2015.8.11.)

**제25조(관리비의 용도)** ① 관리비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② 삭제(2015.8.11.)

[제목개정 2015.8.11.]

**제26조(삭제 2011.5.11)**

**제27조(삭제 2011.5.11)**

###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생생활문화원규정은 폐지한다.

3.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칙으로 관생생활수칙, 관생선발규정 등을 둔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